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「농지법」이 개정(2009.5.27.공포, 2009.11.28시행)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「농지법」 제44조가 삭제되어 「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「농지법」 제44조 ~ 제48조

5.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
 - 2009. 5. 27 법률 제9721호로 「농지법」이 일부개정 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인 「농지법」 제44조가 삭제되어 2009. 11. 28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

- 「농지법」 제44조(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), 제45조(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), 제46조(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), 제47조(경비 보조), 제48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가 삭제됨에 따라 「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」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